

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

공 동 주 택	단지명	
	주 소	
	사용검사일 (=사용승인일)	년 월 일
입주자대표회의	회장(성명)	
	주 소	
	연락처	
()년차 하자보수보증금	보증금액	
	지급한 금액	
()년차 하자보수보증금	보증금액	
	지급한 금액	
()년차 하자보수보증금	보증금액	
	지급한 금액	
()년차 하자보수보증금	보증금액	
	지급한 금액	
지급계좌	금융기관 명칭	
	계좌번호	
	예 금 주	
	지급한 날	년 월 일

위와 같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.

붙임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 1부.

년 월 일

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:

(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비고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-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